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

2026.11.26





찾아가는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01. 정책자금 융자지원
02. 정책자금 규모
03. 세부 내역사업 안내
04. 정책자금 기준금리
05. 정책자금 지원절차
06. 융자 신청 및 접수
07.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08. 융자제한 대상
09. 2026년 변경 주요 제도
10. 2026년 지역 우대 정책 및 신규사업

01. 정책자금 융자지원

정책목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정책방향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 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 지원분야 영위 기업

자금 우선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 성장기반 구축 지원

장기·저리 자금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위주

지역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목표 설정



수도권 : 지방 균형

융자대상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

02. 정책자금 규모

사업	지원규모(단위: 억원)	내역사업	금리	대출기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7,558	▪ 창업기반지원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시설10년(4년 또는 3년) 운전5년(2년)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설10년(4년 또는 3년) 운전5년(2년)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164 (이차보전 1,630 별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정책자금기준금리또는고정금리	운전5년(2년)
		▪ 수출기업 글로벌화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설10년(4년 또는 3년) 운전5년(2년)
신성장기반자금	10,811 (이차보전 2,040 별도)	▪ 혁신성장지원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p	시설10년(4년 또는 3년) 운전5년(2년)
		▪ 제조현장스마트화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설10년(4년 또는 3년) 운전5년(2년)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p	시설10년(4년 또는 3년) 운전5년(2년)
		▪ 스케일업금융	별도 발행금리	5년
재도약지원자금	6,625	▪ 사업전환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설10년(5년 또는 4년) 운전6년(3년)
		▪ 구조개선전용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설10년(4년 또는 3년) 운전5년(2년)
		▪ 재창업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설10년(4년) 운전6년(3년)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	▪ 재해중소기업지원	1.9% 고정	운전5년(2년)
		▪ 일시적 경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p	운전5년(2년)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1,985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30일~365일
		▪ 매출채권 팩토링	연4%내외	30일~90일

총계 : 47,143
(이차보전 3,670 별도)

- 1차 추경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재도약지원자금 5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증액
- 2차 추경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증액

03. 세부 내역사업 안내 (운전자금)

업력별 세부사업

- **창업기반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전체 중소기업 대상
- **재창업자금** —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 업력 7년 이상 전체 중소기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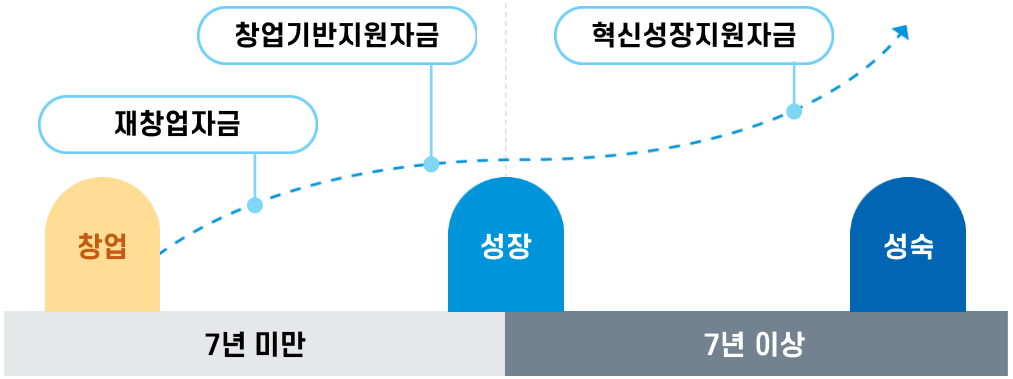

업력무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융자, 이차보전)**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Net-Zero 유망기업지원자금 (융자, 이차보전)**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 10만불 미만)
-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 이차보전)** — (융자) 수출유망기업 (이차보전) 수출 10만불 이상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미만) 기업
- **구조개선전용(일반, 선제적자율구조개선)** —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매출채권팩토링 및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月, 스케일업금융 3月 “별도 공고”

03. 세부 내역사업 안내 (시설자금)

업력별 세부사업

- **창업기반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전체 중소기업 대상
- **재창업자금** —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 업력 7년 이상 전체 중소기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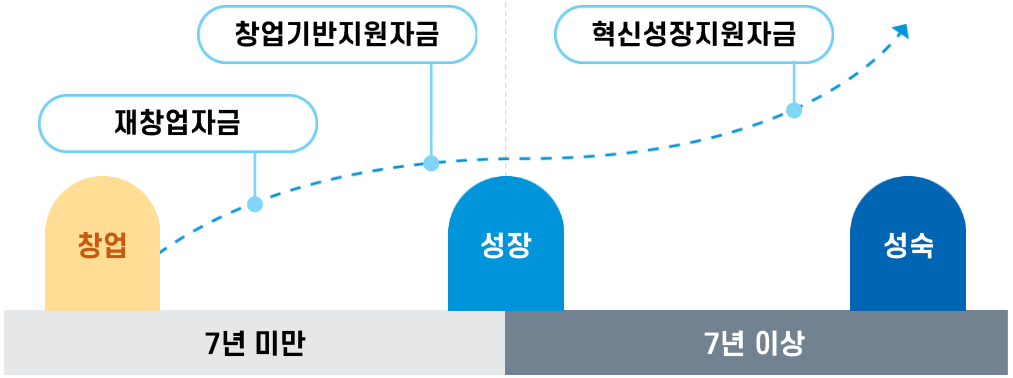

업력무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Net-Zero 유망기업지원자금**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등
-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미만) 기업
- **구조개선전용(선제적자율구조개선)** —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04. 정책자금 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확인

1. 기준금리 ('26.4분기 3.42%)

2. 사업별 기준금리 그룹

※ 이차보전 금리 : (신성장, 신시장) 민간금융 대출금리 - 2~3%p

	자금명	사업별 기준 금리
A그룹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창업기반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B그룹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신시장진출지원**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지원(협동화,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정책자금 기준금리**
C그룹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p**

05. 정책자금 지원절차

중진공 누리집

중진공 누리집

01	02	03	04	05	06
융자 신청 (온라인)	정책우선도 평가 (사전평가)	심사기회 부여	서류 작성 (온라인)	기업평가	융자 결정

07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중진공 ⌄ 중소기업	은행 ⌄ 중소기업	은행 ⌄ 중소기업 (이차차액 보전)		

06. 융자 신청 및 접수

융자신청은 융자 신청(온라인) → 정책우선도 평가 → 신청서류 작성 순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신청희망기업은 전월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기업정보 입력 필요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중 트랙1 신청기업, 마일스톤자금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융자 신청(온라인)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정책우선도 평가

중점지원(혁신성장 등)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서류 작성(온라인)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07.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신청부터 대출까지

“정책자금은 컨설팅사의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 없습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신청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성 위주의 기업평가를 실시하며,
자금지원 여부는 융자신청서의 작성 품질이나 상담·현장평가 대응 능력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자금 승인 및 대출금액의 증액을 위해 불법 브로커의 고액 컨설팅과 보험 가입 등 자금 신청을 위한 별도의 지출이 불필요합니다.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811-3655)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사업 신청 관련 상담 가능
- 정책자금 온라인시스템 활용 관련 문의 대응 및 신청 관련 상담 및 질의 답변 수행

무료자문센터/애로자문센터

- 융자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진공 누리집 내 무료자문 신청 가능
- 중진공 등록 전문가가 융자신청서 작성 방법 및 사업계획서 첨삭서비스를 제공

적합자금 추천 내비게이션

- 중진공 디지털지점 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적합자금 확인 가능
- 추천자금에 대한 지역별 신청일정 및 예산현황 확인 후 신청

YouTube 동영상 활용 중진공 TV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쉽게 따라하기: 실제 신청 화면을 보며 신청 절차 파악 및 이해 가능
-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 안내가이드: 실제 신청서 작성 예시를 보며 따라하기 가능

07.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 제재기준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

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07.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제3자 부당개입 제재조치

부당개입 행위자	부당개입 활동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되거나 정책목적성이 훼손될 경우 형사 고소·고발, 자격정지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조치
부당개입 중소기업	융자자금 조기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신고자	수사의뢰 가능성이 있는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방법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온라인	중진공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광장 →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07.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대상

제3자의 부당개입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건당 최대 200만원)

지급 제외 사유

1. 신고자가 부당개입에 가담한 기업인 경우
2. 신고자가 불법브로커 본인인 경우

자진신고자 면책 제도

면책 및 책임감경 대상

제3자 부당개입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책임의무를 이행한 중소기업

* 책임의무 :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적극적 수사협조에 대한 의무

면책 제외 사유

1. 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공소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신고자가 정책자금 관련 서류를 허위 혹은 조작하여 제출했을 경우

08. 융자제한 대상

융자제한기업

❶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 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적용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❷ 휴·폐업중인 기업

❸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❹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기업

❺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증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08. 융자제한 대상

❻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 ·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❽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적용 예외

- 제재부가금, 환수금을 납부 완료하고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기업
  ※ 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❾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단,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08. 융자제한 대상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 · 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08. 융자제한 대상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

적용 예외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적용 예외

-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 마일스톤자금은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미포함
-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08. 융자제한 대상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적용 예외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 ㉗시설자금

▪ ⑭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⑰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㉘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 ㉗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 ⑪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시설자금 공통)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추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09. 2026년 변경 주요 제도

신성장기반자금

추진내용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추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추진내용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 추가 및 동 사유는 ‘경영애로 규모’, 융자계획 공고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사유 추가 및 동 사유는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청요건 완화

추진내용 — 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에 한함)

K-뷰티 지원확대

추진내용 — 유망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의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확대
※ K-뷰티론(억원) : (’25년) 200 → (’26년) 400 (↑200)

구분	기존	개선
지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기업당 3억원 이내
지원범위	화장품 생산자금	화장품 생산자금 + 필수 부자재(화장품 용기 등)
활용요건	6개월 이내, 지원금액 80% 사용	12개월 이내, 지원금액 70% 사용

09. 2026년 변경 주요 제도

우량기업 융자제한 기준 완화

추진내용 — 그 간 국가 경제 규모 및 기업 외형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량기업 융자제한 기준 일부 완화

(상장기업) 유가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기술유망 中企 성장지원을 위해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예외 허용
※ 기술특례 상장기업(상장 후 3년 이내)에 대한 융자지원 예외 허용 추가

(신용평가 등급) 현재 'BB' 등급은 자본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BB' 등급까지 예외 허용하고, 신용등급 판정 적용 기준을 도입

변경 전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자본시장법 」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변경 후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자본시장법 」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다회지원 제한 완화

추진내용 —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의 시설자금, 딥테크 스타트업 및 소액 지원기업에 대한 다회지원(5년내 3회) 제한 완화
※ 기술특례 상장기업(상장 후 3년 이내)에 대한 융자지원 예외 허용 추가

(고성장 시설투자 확충) AX대전환,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기업 다회지원 제한 완화 (5년내 5회 허용)
※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한정

(스타트업 지원강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 시 다회지원 제한 완화(5년내 5회 허용)
※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기업에 한정

(소액 지원기업 기회 확대) 정책자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소액인 경우,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1회 한정)
※ 소액기준 : 5억원

10. 2026년 지역 우대 정책 및 신규사업

2026년 지역 우대 정책

비수도권 지원비중 확대

('25년 지원실적) 58.5% → ('26년 목표) 61.5% (+3.0%p)

지역주력산업

중점지원분야 중 지역주력산업에 해당 시 정책자금 우선 지원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지방소재기업 70억원 (수도권소재기업 60억원)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 수시 접수 가능
-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 선택가능 자금 제한없음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사업개요 — 산업 현장에 있는 인공지능(AI) 접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

01 융자대상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 도입 · 활용 중소벤처기업**

※ 2026년 중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선정 → 약 300개사 대상

※ 혁신성장분야 內 산업AI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거나 도입·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02 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지원

※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03 지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을 따름

04 우대사항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인하) 및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60→100억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수시접수 및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 적용

05 기타사항

혁신성장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대출 가능

참고. 정책자금 상담·문의처 (중진공 지역본·지부)

수도권

▪ 서울(중구)	02) 769-6416
▪ 서울동부(송파구)	02) 2013-9800
▪ 서울서부(금천구)	02) 2106-7447
▪ 서울남부(서초구)	02) 2023-4326
▪ 인천(연수구)	032) 837-7025
▪ 인천서부(서구)	032) 560-2360
▪ 경기(수원시)	031) 260-4915
▪ 경기동부(성남시)	031) 760-9000
▪ 경기서부(안산시)	031) 783-0631
▪ 경기남부(화성시)	031) 899-9115
▪ 경기북부(고양시)	031) 920-6738

충청권

▪ 대전(대전시)	042) 281-3738
▪ 세종(세종시)	044) 860-8300
▪ 충남(천안시)	041) 589-4589
▪ 충북(청주시)	043) 230-6800
▪ 충북북부(충주시)	043) 841-3600

전라권

▪ 광주(광주시)	062) 600-3000
▪ 전북(전주시)	063) 210-9929
▪ 전북서부(군산시)	063) 460-9821
▪ 전남(무안군)	061) 280-8070
▪ 전남동부(순천시)	061) 729-1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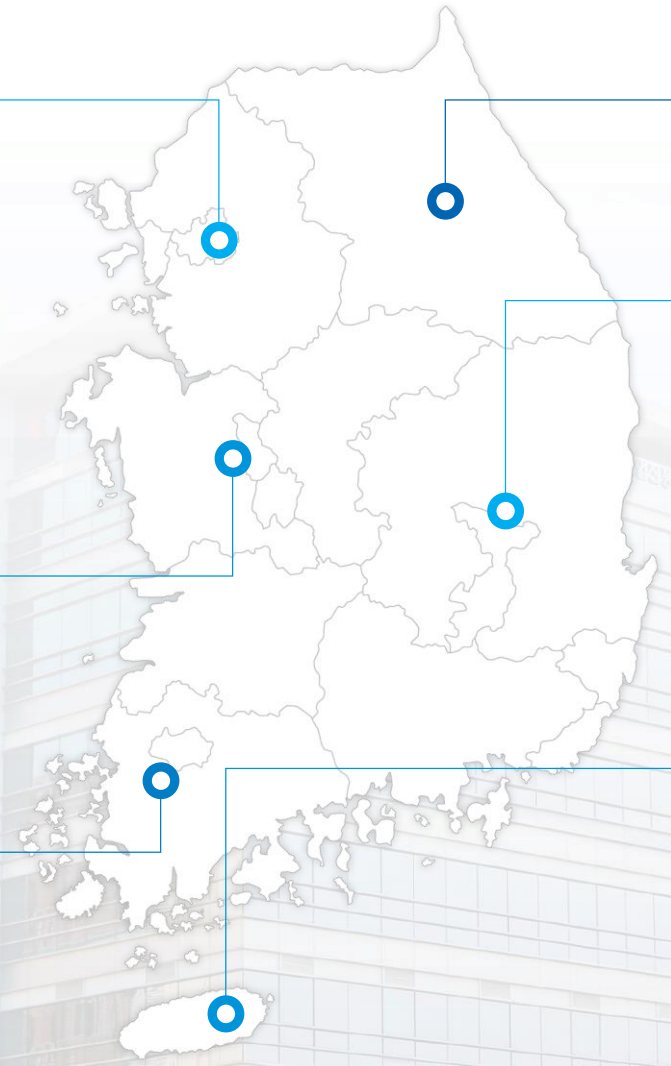

강원권

▪ 강원(춘천시)	033) 269-6900
▪ 강원영동(강릉시)	033) 649-9376

경상권

▪ 대구(대구시)	053) 606-8440
▪ 경북(구미시)	054) 440-5922
▪ 경북동부(포항시)	054) 288-7346
▪ 경북남부(경산시)	053) 603-3301
▪ 부산(진구)	051) 630-7442
▪ 부산동부(해운대구)	051) 745-5928
▪ 울산(울산시)	052) 703-1152
▪ 경남(창원시)	055) 270-9753
▪ 경남동부(김해시)	055) 310-6627
▪ 경남서부(진주시)	055) 751-2910

제주권

▪ 제주(제주시)	064) 754-5159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11-3655
※ ( ) 안은 각 지역본·지부 소재지
※ 누리집(www.kosmes.or.kr) 내 오시는 길, 관할지역 참조







찾아가는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I. 2026년 세부 자금별 지원계획

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0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03. 신성장기반자금
04. 재도약지원자금
05. 긴급경영안정자금
06. 밸류체인안정화자금

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지원규모** — 12,558억원

01 융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창업 분야 (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02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03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04 대출한도
업체당 60억원 이내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 **사업목적** —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
- **지원규모** — 2,000억원

01 융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02 대출금리

연 2.5%(고정금리)

03 대출기간

시설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 6년 이내(거치 3년 포함)

04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이내

05 지원방식

자금 신청,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직접 대출

0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지원규모** — 융자(3,000억원)

01 융자대상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02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03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04 대출한도

(직접대출)기업당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02.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자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지원규모** — 1,000억원

01 융자대상

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특허,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02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03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04 대출한도

(직접대출)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사업목적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지원규모 — 융자(3,164억원), 이차보전(1,630억원)

01 융자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해외법인지원자금)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02 융자범위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 및 매입(토지 구입포함)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03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이차보전)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3%p, 그 외 분야 2%p

04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05 대출한도
(직접대출)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 & 최근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이차보전) 기업당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이차보전

03.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 융자(1조 811억원), 이차보전(2,040억원)

01 융자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협동화자금)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 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03. 신성장기반자금

02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도입, 사업장건축(토지구입비 포함),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유통 물류시설 설치,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자금 등
※ 협동화자금은 토지구입비 지원 시 조건 예외 적용,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시설자금 50% 이내), 별도기준 충족 시 운전자금 융자가능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경쟁력위원회 추진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 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03 대출금리

(직접대출, 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에서 0.5%p 가산 ('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이차보전)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3%p,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3%p, 그 외 분야 2%p

04 대출기간

(직접대출, 대리대출)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이차보전) 운전자금 3년 만기 일시상환

05 대출한도

(직접대출, 대리대출)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
※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중 트랙 1은 연간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기업당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또는 이차보전

03. 신성장기반자금 (스케일업금융)

스케일업금융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 600억원

0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02 사업구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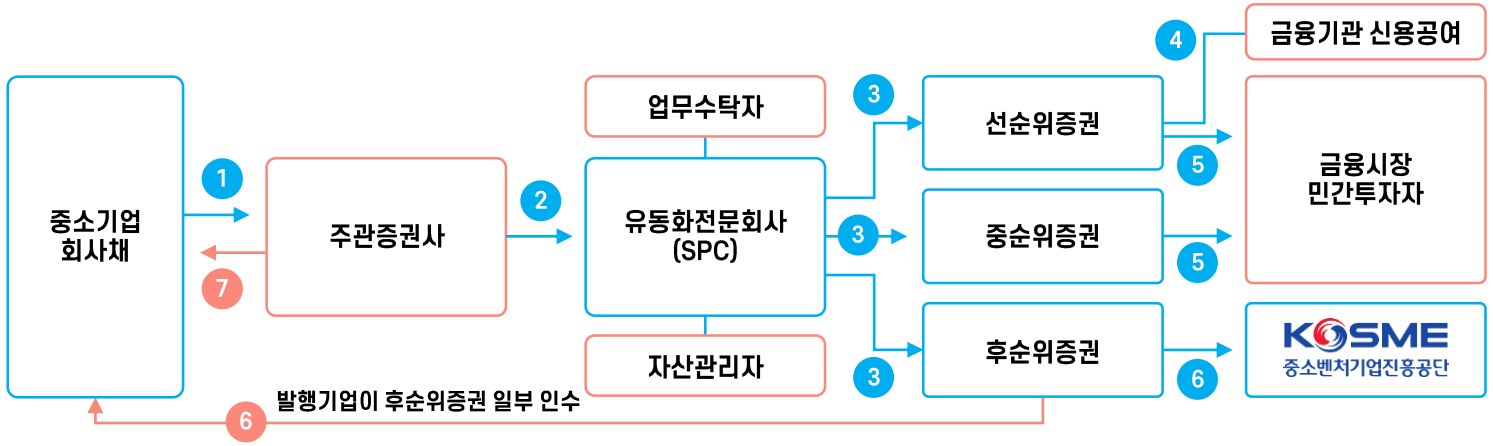

03 진행절차

상담→온라인 신청→기업심사→투자위원회→발행
※ 자세한 사항은 26년 스케일업금융 발행계획 공고 참고

03. 신성장기반자금 (Net-Zero 유망기업 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사업목적** — 그린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 융자(937억원), 이차보전(160억원)

01 융자대상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02 대출금리

(직접대출, 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에서 0.5%p 가산 ('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이차보전)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3%p,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3%p, 그 외 분야 2%p

03 대출기간

(직접대출, 대리대출)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이차보전) 운전자금 3년 만기 일시상환

04 대출한도

(직접대출, 대리대출) 업체당 잔액기준 60억원 이내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기업당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03. 신성장기반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제조현장스마트화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추진 등 ICT 기반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등의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
- **지원규모** — 융자(4,166억원), 이차보전(720억원)

01 융자대상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 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02 대출금리(기준금리)

(직접대출, 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이차보전)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3%p,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3%p, 그 외 분야 2%p

03 대출기간

(직접대출, 대리대출)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이차보전) 운전자금 3년 만기 일시상환

04 대출한도

(직접대출, 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기업당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

05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04.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지원규모** — 6,625억원

01 융자대상

재창업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미만 재창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신산업 창업 기업은 10년 이내)

-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 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폐업 기업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구조개선전용자금

유형 1~3에 해당하는 기업

- (유형1)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유형2)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유형3)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04.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❶ (일반)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개념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신청일 기준)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11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도약 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1항 (우량기업) 중 신평사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 자본총계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 최상위 등급(CR1) 적용 예외 가능

❷ (사업재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신청일 기준)

❸ (통상변화대응)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대상	
통상변화대응 (기존 무역조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10항(부채비율 초과기업), 11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04. 재도약지원자금

02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 정보화 설비,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건축, 토지구입비,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②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소요경비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만 지원 가능(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은 시설도 가능)

03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의 운전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04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 통상변화대응은 연 2.0% 고정금리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은 연 2.5% 고정금리

05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은 직접대출

05.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중소기업지원

-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01 융자대상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Ⅲ.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 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 항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02 융자범위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소실된 건축물의 재건축, 기계 구입 등 시설복구 포함)

03 대출금리

연 1.9%(고정금리 적용)

※ 특별재난지역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인하(1.5% 고정금리 적용)

04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특별재난지역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3년 만기연장 또는 6개월 상환유예 지원(거치기간 부여, 이자 정상상환)

05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06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5.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일시적경영애로

-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01 융자대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02 융자범위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보호무역피해, 환율피해, 대형사고(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한중FTA 지원업종(피해),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화학안전 법령 이행,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소재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기타 중기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석유화학 업종 및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03 경영애로 규모비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04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26년 4분기 기준금리 3.42%)

05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06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07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06.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사업목적** — 발주서 기반의 단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395억원

0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02 대상채권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사업프로세스

▪ 지원기간 : 30일~365일 중에서 수·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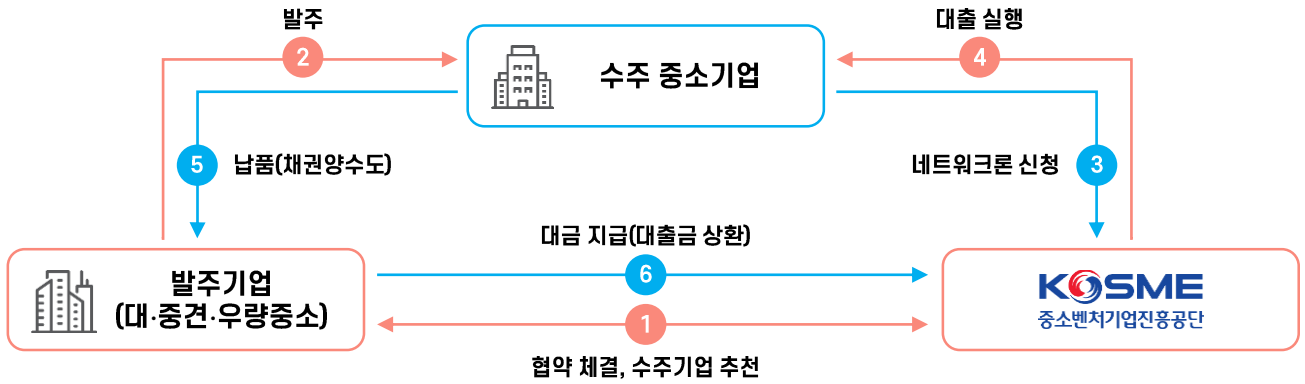

06.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매출채권팩토링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지원규모** 590억원

01 지원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02 지원방식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사업프로세스

- 할인율 : 매출채권 인수 시 4%내외의 할인율
- 한도 : 판매기업 10억원 이내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0~90일(15일 단위)



청렴한중진공

부패 제로(0) 중진공과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지원 과정에서
부정청탁,특혜제공 등 어떠한 부정행위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제3자(불법 브로커 등)의 개입은 지원제외, 불이익의 사유가 됩니다.

*신청서류,심사대응 대행업체, 불법 컨설팅등을 댓가로 부당이익 수령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중진공 누리집 -> 참여광장

청렴 부서장 직통 소통채널로 제보해 주세요!
clean-hotline@kosmes.or.kr

-청렴 저해행위,부패행위,제3자 부당개입 등 각종 불편 사항

청렴은기본 | 불법 브로커 아웃 | 부패제로(0)

현장 톡톡!

찾아가는 중진공

찾아가는 중진공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합니다.